

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기준(제105조제2항제3호 관련)

1. 시설기준

시설의 종류	
진료실	임상병리실 (혈액·소변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것)
신체검사실	방사선실
청력검사실	대기실

2. 의료장비기준

장비의 종류	
신장계	심전도기
체중계	※ 운동부하심전도기
청진기	시력표/시력검사기
혈압계	시야검사기
이비경	사위검사기
검안경	안압측정기
흉부X선검사기	색각검사기
소변검사스틱	※ 입체시측정기
혈액검사기	※ 안저검사기
※ 폐기능검사기	청력검사기
※ 뇌파검사기	※ 청력검사부스

비고

1. 시설 및 장비의 기준량은 1이다.
2. ※는 권고 장비이다.